



## 대구지방법원

### 판결

사 건 2024고단521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길상난(기소), 남현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애플

담당변호사 성시형, 박소윤, 정진욱, 윤성준

판 결 선 고 2025. 2. 13.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범 죄 사 실

#####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도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4. 4. 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글을 올린 D에게 전화하여 'E'이라는 대부업체라고 소개하고 500,000원을 대출해주기로 하면서 원금상환일은 2024. 4. 15.로, 1일 연체이자 30,000원으로 약정하여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한 300,000원을 지급하고 2024. 4. 15.경 연체이자 1일분 30,000원을 포함한 합계 53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대출해주고 연 20%를 초과(연이율 156%)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채무자 D가 정해진 기일에 돈을 갚지 못하자 2024. 4. 15. 12:39경 D의 휴대전화에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5. 6. 14: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여 음향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회신자료

####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통화내역 캡처사진

#### 1. 출력물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채권추심 관련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1유형]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2022년 벌금형을 받았고, 그 이후의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에서 대부 관련 범행의 경우 그 규모가 크지는 않고, 추심 관련 범행의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었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도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여러 다른 양형조건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안경록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7

### 범죄일람표 1

| 대부<br>순번 | 상환<br>순번 | 대출일자       | 대출금       | 선이자     | 실제 입금액  | 상환일자       | 상환금     | 입금계좌                     | 연 이자율 |
|----------|----------|------------|-----------|---------|---------|------------|---------|--------------------------|-------|
| 1        | 1        | 2024-04-01 | 500,000   | 200,000 | 300,000 | 2024-04-15 | 530,000 | F<br>G조합 (계좌번<br>호 1 생략) | 156%  |
| 2        | 1        | 2024-04-16 | 500,000   | 200,000 | 300,000 | 2024-04-30 | 30,000  |                          | 156%  |
|          | 2        |            |           |         |         | 2024-05-07 | 300,000 |                          |       |
| 합계       |          |            | 1,000,000 | 400,000 | 600,000 |            | 860,000 |                          |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7

## 범죄일람표 2

| 순번 | 일시                 | 방법 | 비고 |
|----|--------------------|----|----|
| 1  | 2024. 4. 15. 12:39 | 전화 |    |
| 2  | 2024. 4. 15. 16:09 | 전화 |    |
| 3  | 2024. 4. 15. 18:32 | 전화 |    |
| 4  | 2024. 4. 30. 16:09 | 전화 |    |
| 5  | 2024. 5. 2. 12:48  | 전화 |    |
| 6  | 2024. 5. 2. 12:55  | 전화 |    |
| 7  | 2024. 5. 2. 13:07  | 전화 |    |
| 8  | 2024. 5. 2. 13:30  | 전화 |    |
| 9  | 2024. 5. 2. 14:45  | 전화 |    |
| 10 | 2024. 5. 2. 15:57  | 전화 |    |
| 11 | 2024. 5. 2. 17:01  | 전화 |    |
| 12 | 2024. 5. 3. 14:50  | 전화 |    |
| 13 | 2024. 5. 3. 15:34  | 전화 |    |
| 14 | 2024. 5. 3. 16:21  | 전화 |    |
| 15 | 2024. 5. 3. 22:10  | 전화 | 야간 |
| 16 | 2024. 5. 3. 22:39  | 전화 | 야간 |
| 17 | 2024. 5. 3. 23:01  | 전화 | 야간 |
| 18 | 2024. 5. 3. 23:01  | 전화 | 야간 |
| 19 | 2024. 5. 3. 23:29  | 전화 | 야간 |
| 20 | 2024. 5. 4. 08:19  | 전화 |    |
| 21 | 2024. 5. 4. 08:22  | 전화 |    |
| 22 | 2024. 5. 4. 14:34  | 전화 |    |